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6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6조,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0.

다. 회 부 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그 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6조,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의 원칙에 장애평등 관련 사항 규정 - 장애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정부가 예산이 「장애평등정책법안」 제2조제2호1)에 따른 장애평등(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산의 원칙에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별도의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임.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²⁾가 도입되어

1) 「장애평등정책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평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³⁾가 도입되어 2023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지 예·결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평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이에 개정안도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⁴⁾은 총인구(5,177만명)의 약 5.1%인 264.7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등록장애인 수]

(단위: 천명)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2,519	2,494	2,546	2,623	2,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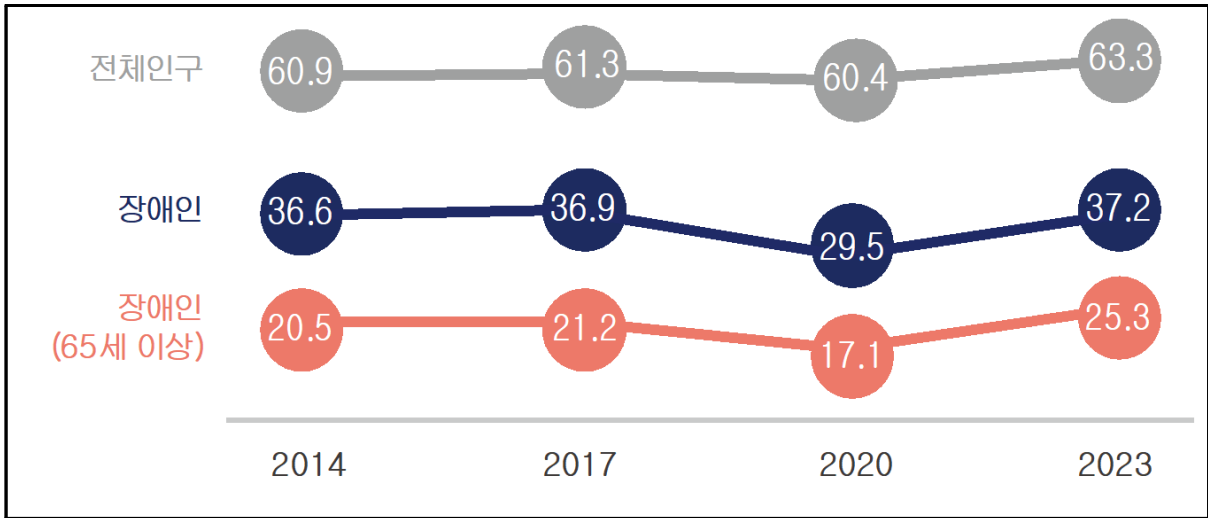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또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⁵⁾’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등록장애의 유형은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15가지 유형이 있음
 5)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3,058천원(전국 가구 평균의 63.3%)으로 낮은 편이며,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낮은 수준임.

[만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2014~2023)]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양질의 삶과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전반적 행복감’⁶⁾ 역시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으며,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80.1%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분야별로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6)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한 정도를 의미함. 0~10점 중 응답하며 0점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10점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의 동일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참여율 또는 수혜율이 낮게 나오는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 없이 비장애인 수준에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책과 서비스 등이 시행되기에 앞서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 배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⁷⁾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보임.

한편, 「장애평등정책법안」에서는 장애인지 예산을 도입하면서 ‘장애인지 통계’ 및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⁸⁾

이러한 장애인지 통계, 장애인지 교육 및 국가장애평등지표 개발 등

7)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2017), p.5

8) 「**장애평등정책법안**」 제6조(장애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장애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평등지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의 장애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장애평등 의식·문화 및 장애인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장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실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될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제도와 장애인지 예·결산서를 연계할 경우 예산이 장애평등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 및 장애인지 예·결산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기 도입된 성인지 예·결산제도 및 최근 도입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결산제도의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¹⁰⁾

한편,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장애평등정책법안」(의

9) 기획재정부도 주요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지 예·결산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애인 예산은 이미 확대 추세(장애인 지원예산: ('22)5.1조원 → ('23)5.8조원 → ('24)6.4조원 → ('25)6.8조원)로, 단순 예산 취합 목적의 별도의 예산제도 도입은 실효성 대비 행정부담이 과도할 우려가 있으며, 정책과 예산이 실제 장애인 격차 해소 등 목표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분석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장애인지 예산제도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심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번호 제2200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 정관리계획 3. ~ 5. (생략) ④ ~ ⑪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73조의5-----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16조(예산의 원칙)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정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 (이하 “장애평등”이라 한다)에 미 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7조의2(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지 예산서에는 장애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장애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 9의2. (생략) <u><신설></u> 10. ~ 16. (생략) <u><신설></u>	③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장애인지 예산서 10. ~ 16.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 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 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u>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u> <u>제72조까지의</u>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 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 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 ----- ----- ----- -----

현행	개정안
지 아니한다. <신 설>	-----. 제6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장애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장애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 6의2. (생략) <신 설> 7. (생략) <신 설>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 ----- ----- ----- ----- ----- ----- -----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현행과 같음) 제73조의4(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 행	개 정 안
	<u>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장애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u>
<u>제73조의4</u>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생략)	<u>제73조의5</u>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현행 제73조의4와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